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33
----------	-------

발의연월일 : 2017. 12. 5.

발의자 : 안규백 · 전현희 · 최인호

이원욱 · 이춘석 · 강훈식

이동섭 · 민홍철 · 김경협

윤관석 · 박홍근 · 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카드사와 제휴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형 임대사업자(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정책 미흡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받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 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임대료) ① · ② (생 약) <u><신 설></u>	제44조(임대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 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 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 부 받을 수 있다.